

[報 文]

嘉禮都監을 통해 본 李朝 宮中 法服(翟衣)의 變遷

白 英 子

德成女子大學 衣裳學科

A Study on the Changes of Court Dresses in the Yi Dynasty

Young Ja Baek

Duck Sung Women's College, Department of Clothing

Abstract

From the period of King Tae-Jong up to the third year of King In-Jo, the bestowal system for queen's court dresses from the Myeong Dynasty was one which was much lower than that of China. This system was applied to the queens' court dresses in the early Yi Dynasty.

The pheasant's pattern on Jeockwan and Hapee probably indicates that Daesam was possibly regarded as Jeockyoe. In fact, according to Kaeredogam, Jeockyoe was for the first time made in the third year of King Kwanghae, which is the oldest record on Jeockyoe and Daesam.

At the age of King Seon-Jo, a new type of queen's clothing was taken as an inevitable result of Japanese Invasion. Jeockyoe system was gradually made ceremonious until the period of King Yeong-Jo through Kakhonjeongye and Kukjosokoryeyeobo; it became that of Queen Myeong-Jo's in the end.

The traditional Jeockyoe system might have been interblended with Daesam. Yeodae was queen's usual dress and its pattern was the same as that of every women's dresses at Court.

I. 緒 論

本考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례도감(嘉禮都監)은 이조 역대의 王, 세자의 國婚절차를 마련하고 거행한 儀軌로서 丙亂前의 것은 소실되고 現在 仁祖代의 「소현세자」, 「莊烈后」, 顯宗「明聖后」, 肅宗「仁敬后」, 「仁顯后」, 「仁元后」, 景宗「端懿后」, 「宣懿后」, 英祖「貞純后」, 真宗「孝純後」, 莊祖「獻敬后」, 正祖「孝懿后」, 純祖「純元后」, 文祖「神貞后」, 憲宗「孝顯后」, 「孝定后」, 哲宗「哲仁后」, 高宗「明成后」, 純宗「純明后」, 「純宗妃」의 嘉禮都監儀軌가 남아 있다.

현재 服飾에 관한 자료로서 유물은 거의 인멸되고 문헌으로는 실록, 雜筆을 통해 미미하게 산재해 있는 실정에서 역대를 이어져 내려오며 실시된 服飾制度이 자아울리 기재된 상세한 내역으로 해서 궁중 복식 변천상

황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嘉禮都監은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의궤에 등장하는 服飾制度는 봉건 세습 군주 사회의 정통 계승을 위한 의식용으로 의식이 지니는 엄격한 규율과 권위에 따른 보수성을 지니고 그 시대 화려함이 최고도로 발휘된 궁중의 服飾制度의 총망라라하겠다.

그중 歷代 嘉禮 때 사용된 妃嬪의 法服을 살피고자 하며 특히 壬亂 이후 유물 실진에 따라 추고 제조된 法服으로서의 翟衣의 형성과, 高宗皇帝 즉위후 일반적으로 알려진 翟衣로서의 차이점을 增補文獻備考, 國朝續五禮儀 문현내용을 기초로 삼고 嘉禮都監, 國婚定例, 尚房定例에 나타난 單子의 내부 조목과 비교 적용하여 밝히고자 하며 法服에 딸린 附隨服飾과 妃嬪의 衣冠, 상궁, 內人們의 복식의 변천 고찰은 다음으로 미루는 바이다.

Ⅱ. 本 論

1. 壬辰倭亂 이전의 服飾制度

1) 王妃 賜與冠服

漢文化圈에 속한 東洋의 제 國家와 中國과의 관련은 주지의 사실이거나 와 가까운 인접국으로 政治的, 文化的 宗主國으로서 맷은 우리나라와의 연관은 우리 社會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中華로 칭하는 大國에 대한 國家의 존망의식과 발달된 文物제도에 대한 지향성은 전통적인 事大사상으로 이어 내려 漢文化 수용의 기본자세를 고정시켰다.

이러한 漢文化 수용의 기본자세는 服飾에도 그대로 適用되어 中國制服飾 도래 이후 二重構造를(中國式 冠服↔고유의복, 男服↔女服, 都邑↔邊陲)¹⁾지니고 계급적 우월감의 표상으로 받아 들여진 것이다.

李朝時代에 와서는 高麗의 구세력에 대응되는 權威로써 明을 받들고 使節을 파견하였는 바 복식의 도입은 주로 이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使節 파견은 正月 1日 賀正使, 明皇帝生日의 聖節使 皇太子生日 千秋使, 이밖에 조선이나 명의 喪去, 嗣位, 册妃 등에도 파견되었는데 使節의 目的이 주로 政治의였으나 文化의 도입과 물품의 交易도 이를 통하여 행해졌다²⁾.

明에 보낸 예물은 金, 銀, 馬匹, 人參, 豹皮, 茄布, 花文席, 螺鈿等 이밖에 明의 수시적 요구에 응하여 다향의 馬匹 및 쳇녀, 宦官등을 보냈고 담배물은 주로 絹段(絹織), 磁器, 樂材, 禮服等 외에 조선의 요구에 의해 각종 서적을 보내왔는데³⁾ 이를 禮服에 의해 李朝時代의 衣冠制度는 이루어졌다.

李朝의 王妃 冠服은 晉服과 더불어 明의 賜與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高麗時代 恭愍王 19년

② 太宗3년

③ 文宗 �即位年

④ 世祖2년

⑤ 睿宗元年

⑥ 成宗元年

⑦ 成宗12年

⑧ 中宗3年

⑨ 中宗13年

⑩ 明宗元年

⑪ 明宗13年

⑫ 宣祖3年

⑬ 宣祖35年

⑭ 宣祖36年

⑯ 仁祖3年 4)

그런데 仁祖17년 6月 辛亥에는 仁祖 繼妃 趙氏에게 清나라에서 詔命이 와서 中殿이 親受할 것을 要求하였으나 親受하지 않았다.⁵⁾

이와같이 仁祖3년까지는 明나라에서 詔命과 冠服頒賜時에 中殿이 親受하였는데明朝가 쓰러지고 清이 일어나 禮制에 있어서 많은 變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清나라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 열거한 賜與冠服 中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物目을 적어 대체적인 윤곽을 보기로 하겠다.

① 太宗3年11月

王妃冠服, 一部

珠翠七翟冠 一頂(以下略)

各色紵綉絲衣服 霞帔等項 四件內

大紅紵綉絲爽大衫 一件

福青紵綉圓領 一件

青素紵綉翟鶴霞帔 一副

銅花金墜頭 一箇

金段紗羅 共一十四件……,

金紵絲 二匹

素紵絲 二匹

織金羅 一匹

素羅 二匹

織金紗 一匹

素紗 二匹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珠翠七翟冠一頂을 위시하여 이의 附屬品들과, 大衫, 圓領, 霞帔, 金墜頭를 中心으로 한 冠服 1벌과 웃감이 포함되어 있다.

② 文宗 即位年 8月의 王妃 冠服은 다음과 같다.

王妃 珠翠七翟冠 一頂 金簪金翟寶鈿花

結子等件全

級花金墜子 一箇

各色紵綉衣服二套 計七件

一套 四件(大紅紵絲大衫 一件,

福青紵絲綉圓領 金翟雞梢子一件,

青線羅繡金翟雞霞帔一副

象牙笏 一枝)

一套 三件內(大紅織金雲肩海裳四季花紵絲團衫
一件,

翠藍暗細花紵絲襖 一件,

柏枝綠暗細花紵絲裙 一件)

沈香色禮服匣一座 謂箱等件全

여기에는 大衫, 背子, 霞帔, 女笏등이 있고 또 團衫
襖兒, 裙등이 있는데, 大衫, 背子, 霞帔, 女笏은 王妃
禮服이 되는 것이며 團衫, 襪兒, 裙은 王妃 常服이 되

는 것이다.

③ 成宗 12年에 가져온 王妃服도 大衫, 背子, 霞帔, 女笏과 圉衫, 褓兒, 裙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으로서 明에서 賦與된 王妃服의 物目을 알아 보았는데 이것은 制式에 별차 없는 것들이었으며 冠制에 있어 七翟冠이 明의 郡王妃禮에 의한 것이었듯이 그 衣服制度 역시 이에 따른 것인데 이는 다음 中國 冠服制度를 보면 알 수 있다.

郡王妃 冠服

永樂三年定

冠用七翟 與親王世子妃同

其 大衫 霞帔, 燕居佩用之飾 俱同親王妃

第繡雲霞翟文 不用盤鳳文

(明史 卷六六 志第四二 與服二)

여기서 이상한 것은 二等遞降原則에 따라 우리나라 국왕은 親王으로 秩視하여 九章冕服을 賦與받았는데 王妃의 冠服은 階級을 降等하여 親王妃服이 아닌 郡王妃服을 賦與받았고 또 이를 착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大衫, 背子, 霞帔, 女笏등은 明에서는 親王妃나 郡王妃의 禮服이었으되 皇后나 皇太子妃의 常服에 속한 것이었으며, 그 禮服인 翟衣 바로 그것은 아니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通稱 翟衣 또는 雜翟衣로 일컬어 왔다는 점이다.¹⁰⁾

2. 壬辰倭亂 後의 服飾制度

1) 法服의 製造時期

李朝에 들어와 明이 賦與한 王妃冠服은 郡王妃制에 의거한 것으로 大衫, 背子, 霞帔등이며 翟衣라고 일컬어져 있으나 翟衣 자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翟衣 착용, 제조의 시기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우선 法服의 製造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文宗 即位年 3月 世宗의 大歎時 冕服使用의 논의에서 賦與된 冕服 二件, 世宗이 命하여 만든 것 一件이 있는데 欽賜服을 襲歎에 쓰지 않는다고 하였고 木國이 만든 것은 세종께서 賦與服의 材料를 써서 만들라고 명한 것이다.¹¹⁾

○世宗2年 太宗妃 异遐時에 禮官이 命服으로 大歎하기를 奏請함에 命服은 金銀珠玉으로 꾸민 것인데 金銀珠玉은 古인이 삼가한 바며 上王도 誠寧의 葬에 珊瑚를 마치라 하는 것을 물리쳤으니 萬世를 위해서 신려한 바라 平時의 冠服으로 大歎토록 하였다.¹²⁾

○그러나 世宗28年 3月 世宗妃의 大歎에는 命服을 使用하고 있다.¹³⁾

以上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太宗妃异遐時 命服을 사용하지 않은은 儉素의 기풍을 신도함에 있으나 실

상은 太祖에서 世宗에 이르기까지 賦與된 王妃 冠服이 太宗때에 받은 冠服 1벌 뿐이므로 太宗妃의 大歎에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世宗의 命으로 昇服제작과 더불어 王妃冠服도 製作되어 大歎에 使用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결국 世宗祖부터 製作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¹⁰⁾

그러나 이들은 翟衣로 明示된 것이 아니라 命服으로 표기되었고 賦與冠服의 體制를 써서 만들라 한 世宗의 命으로도 翟衣가 아닌 大衫으로서의 命服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다.

또 실제로 “翟衣”라고 명시된 예를 보면 世祖實錄 6年4月에 命婦賀中宮儀에 王妃具翟衣加首飾이라고 나와 있고 國朝五禮儀 등에도 王妃具翟衣加首飾이라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을 뿐 大衫과 대응되는 차별화된 翟衣用例를 볼 수는 없다.

○宣祖때 壬辰亂을 겪은 이후 35年7月 仁穆王后 嘉禮時 嘉禮都監 啓請에 「翟衣制度에 대한 것은 追考하는데가 없다. 다만 大明會典에 依據하면 親王郡王妃冠服制度는 大衫에는 大紅을 쓰고 霞帔는 深青을 바탕으로 하며 紵絲紗羅를 隨用한다. 四襟襍子 即 褒子는 桃紅色이고 翠衣는 青色에 紵絲紗羅를 아울러 隨用한다. 그리고 黃大帶를 쓰지 아니하고 青線羅로 이를하는데 緣이 있다. 或 紅羅를 쓰기도 한다. 玉縠主, 玉革帶에 花采의 紹를 엮고 玉佩를 달고, 青綾, 青舄을 하여 具備한다. 이로 보면 前日 明에서 欽賜한翟衣는 宰備한 것이 많고 賽來使臣도 이를 미처 覺察하지 못하였다. 만약 玉革帶, 佩綾, 襪舄을 갖추려면 반드시 九翟冠을 한然後에 其制를 바야흐로 갖출 더인데 이체 卒地에 갖추기 어렵다」¹¹⁾라고 있어 유물이 인밀되어 논란하는 과정에서 賦與服飾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禮曹判書 柳根節의 啓에서 國朝五禮儀에 具翟衣加首飾之文이 있을 뿐 玉妃의 冠服制度는 미처 講究되지 않았는데 宣祖께서 中國의 典章을 본받아 大明會典所載에 따라 定하였다.¹²⁾

○뒤에 「仁祖 23年 嘉禮都監 啓에서 宣祖壬寅年 嘉禮時 7翟冠을 啓請하나 匠人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¹³⁾는 내용으로 보아 결국 仁穆王后 嘉禮時 舉論되었던 九翟冠이 아닌 七翟冠이 啓請되었으며 따라서 郡王妃制度를 借用한 것으로 믿어진다. 역시 翟衣도입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宣祖時 大明會典에 의지하여 王妃服飾을 새로이 追考制定한 사실은 再考의 여지가 없겠다.

昭顯世子를 펼두로 하는 諸嘉禮都監에는 法服으로서 翟衣와 아울러 大衫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어 이 시기에서 적의의 제조를 소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료를 찾

던 중 현종 가례도감에 첨부된 辛亥登錄의 발견으로 그 시기로 앞당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즉 光海君 3년 世子嬪 冊立¹⁴⁾에 해당하는 辛亥登錄으로 해서 大衫과 翟衣의並用은 光海君代로 소급된다. 그런데 이 光海時의 차도는 바로 前代 宣祖時 王亂을 겪고 大明會典에 의거하여 王妃服飾을 制定한 事實에 비추어 前代의 制定을 준수하였을 것임에 틀림없겠다. 생각컨대 明의 국세가 용성했던 이조 前期 大明의 皇帝가 변방의 親王으로 대우하여 사여한命服에 대해 느꼈던畏敬心과 王亂후 급속히 弱化된 明에 대한 恩功의 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明의 服制를 追考 制定하는 過程에서 舊例 翟衣에 대한 認識과 더불어 賜與服飾 그 자체가 아닌 大明集例에 의거한 翟衣가 追考될 수 있었으리라 봄은 그다지 무리한 추측이 아닐 것이다.

2) 法服의 변천

歷代 嘉禮都監中에서 선택한 몇몇개의 嘉禮都監과 國婚定例, 尚房定例등에 나타난 服飾을 頭飾, 袍, 帶, 衣裳, 褙, 履, 付屬品으로 구분하여 표 I, II, III, IV에 정리하였다.

表 I. 昭顯世子 嘉禮都監 儀軌(仁祖5年 1627)

| 頭 飾 | 袍 | 帶 | 衣 | 裳 | 袴 | 履 | 附 屬 品 |
|-----------|--|----|--|---|---|---|--|
| 翟冠減 鬚髮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翟 衣(無紋鵝青匹段) (內藍敷綃) (如貫子繡) 三十六片 • 袂大衫(無文大紅匹段) (內・木紅綃) • 圓 衫(雲紋草綠匹段) (內・木紅綃) | 佩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袂 褥(花紋大紅匹段) • 景 衣(藍紗)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赤舄 • 襪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後胸背 (波湯草綠羅) |

表 II.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孝宗2년 1651)

| 頭 飾 | 袍 | 帶 | 衣 | 裳 | 袴 | 履 | 附 屬 品 |
|--|--|---|---|--|---|----------------------|-----------|
| 翟衣 別衣 內衣 挾長衫(一) 圓衫(一) ※霞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翟衣 (鵝青花紋匹段) (內・冒段) 別衣 (大紅花紋匹段) (內・大紅花紋匹段) 內衣 (大紅花紋匹段) (內・大紅花紋匹段) 挾長衫(一) (無紋大紅匹段) 圓衫(一) (雲紋草綠匹段) (內・木紅綃) ※霞帔 (鵝青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帶 (草綠花紋匹段) (大紅花紋匹段) (內・白羅) (童多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挾襖 (花紋大紅匹段) (內・木紅綃) 景衣 (藍紗)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挾裙(一) (花紋鵝青匹段) (花紋藍匹段) (內・木紅綃) (纓子次大紅花紋匹段) ※綵 (錦衣匹段) (內・大紅有紋紗) ※蔽膝 (大紅廣的) (內・大紅有紋紗) (多綃) | | 黑襖 (冒段) (內・藍羅) | 繡 (冒段) |

表 III. 國婚定例 中宮殿(영조 25년)

| 頭 飾 | 袍 | 帶 | 衣 | 裳 | 袴 | 履 | 附 屬 品 |
|-----------------------------|--|--|---|--|--|---|--|
| 面紗 (紫的羅) (貼金) (泥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翟衣 (大紅鄉織) (內・大紅鄉織) (翟雞泥金) 別衣 (大紅鄉織) (內・大紅鄉織) 內衣 (大紅鄉織) (內・大紅鄉織) ※霞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五色多綃 大帶 (草綠鄉織) (大紅鄉織) (內・白羅) (青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裳 (前三裳後四) (藍鄉織) (內・白方紗綃) 後綵 (錦衣鄉織) (內・大紅紗) 蔽膝 (大紅鄉織) (內・大紅紗) | <ul style="list-style-type: none"> 赤襖 (大紅廣的) (안・藍羅) 赤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繡 (大紅廣的) 珮玉 白玉圭 味玉帶 胸背4祚 |

表 IV. 純宗妃 嘉禮都監儀軌(光武10年 1900)

| | 頭 飾 | 袍 | 帶 | 衣 | 裳 | 袴 | 履 | 附 屬 品 |
|----|-----------------------------|---|---|--------------|--|-----------------------------|-----|-------------------|
| 法服 | 四紗 (紫的羅) (貼金) (泥金) | 翟衣(一) (深青彩翟紋匹 緞) (內·大紅匹緞) (緹·大紅織金 雲鳳紋匹緞) | 大帶 (青紅兩色 織金雲鳳 紋匹緞) (大紅匹段 半幅) | | 綵 (錦衣匹緞) (大紅紗) 綠襯裙 (前三後四) (紅色匹緞) (內·白方紗紬) (綠襯綠織金彩 化鳳紋匹緞) | 青襪 (藍色匹緞) (內·大紅 羅) | 青舄 | 繡 (大紅匹緞) 佩玉 |
| | | 中單 (玉色紗) (緹紅色紗) (泥金) | | (內·白羅 半幅) | | 青舄 | 白玉圭 | 味玉帶 |
| | | 大衫 (大紅匹緞) (內·大紅匹緞) | | | 蔽膝 (深青彩翟紋匹 緞) (內大紅紗) (緹大紅織金雲 鳳紋匹緞) | | | 馬背4疋 青舄 |
| | | 內衣 (大紅匹緞) (內·大紅匹緞) | | | | | | |
| | | ※霞帔 (冒緞) | | | | | | |

法服과 衣襢의 분류표시는 英祖 國婚定例에 준해 정리하였다. 袍, 衣등으로 분류하기에 곤란한, 밝혀지지 않은 복식은 옷감과 판례에 비추어 추측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차후 服飾研究에 미루고자 한다.

위에 정리한 表와 그 이외 辛亥(光海3年 世子嬪), 戊寅(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仁祖 16年(1638)), 王子(純宗 純明后 嘉禮都監儀軌, 高宗19年(1882)에 나타난 服飾의 대체는 다음과 같다.

辛亥, 丁卯(소현세자), 戊寅의 法服제도는 대동소이하다. 즉 翟衣, 大衫, 陞衫, 袂襖, 袂裙, 霞帔, 佩玉, 赤舄, 穡, 景衣, 髮髻로서 辛亥, 戊寅은 稽子가 더하고 戊寅에 綵, 大帶, 玉帶, 青玉圭등이 첨부된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顯宗妃時에는 大衫(挾長衫과同一내역)의 제도가 동일하게 포함되는 이외 別衣, 內衣, 蔽膝이 등장하여 翟衣의 격식을 갖추는 기틀을 보이고 있다.

英祖에는(國婚定例) 大衫이 탈락하고 衣이 추가하여 翟衣, 別衣, 內衣, 綵, 蔽膝, 大帶, 衣, 繡, 面紗, 赤襖, 赤舄, 味玉帶, 佩玉, 白玉圭로 法服制度의 차림식기를 이룬다. 여기에서 嬪宮은 차등이 있어 黑襖, 黑舄, 青玉圭등 색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制度는 그대로 이어져 실시되다가 高宗祖 大韓帝國의 성립으로 中國皇后, 皇太子妃에 해당하는 服飾制度의 成立를 보고 있다.

이제 英祖代에 확립된 王妃 및 世子嬪의 法服制度, 高宗代의 皇后, 皇太子妃의 法服制度를 增補文獻備考(國朝續五禮儀補)에서 인용하고 이어 嘉禮都監, 國婚定例와 대조하여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자 한다.

一增補文獻備考(國朝續五禮儀補)의 王妃 및 王世子 嬪 法服一

王妃의 禮服으로 주는 白玉으로 하여 殿下의 制度와同一하고 翟衣는 大紅緞으로 하고 前面左右가 바로 내려와 여여지지 않음이(稽子와 같고) 앞길이는 치마단과 가지런히 한다. 뒷길이는 치마길이 보다 1차쯤 길다. 앞뒤에 金絲로 繡놓은 五瓜圓龍을 붙이고 앞의 補 밑으로 圓翟을 左쪽에 일곱, 오른쪽에 일곱을 웃단까지 붙이고, 웃단에 있는 것은 左쪽 오른쪽 각 하나를 서로 連하는 것 같이 붙이고 뒤의 補 아래에는 圓翟을 左쪽에 아홉, 오른쪽에 아홉을 웃단까지 이르게 하고 또翟하나를 웃단 中間에 붙여서 서로 連하듯 하게 하며 左右 소매를 넓게 웃앞에 가지런하게 하여 소매 바깥쪽에 또 圆翟을 左쪽에 아홉, 오른쪽에 아홉을 붙여서 그 數가 모두 51이다.

……中略……

世子嬪의 禮服으로……

翟衣는 黑緞으로 하고 가슴과 등에는 金絲繡 四瓜龍을 붙인다. 웃의 제도는 王妃와同一하고……¹⁵⁾

一增補文獻備考에 나타난 皇后 및 皇太子妃 法服一

皇后的 翟衣는 深青色에 翟紋을 十二等으로 配列하여 사이에 小輪花를 넣었다. 그리고 깃, 도련, 소매끝에는 紅色의 襪을 두르고 雲龍紋을 織金하였다. 夏節에는 紗羅를 着用한다. ……이하 略

皇太子妃의 翟衣는 皇后와 같이 深青이고 翟紋이 9等으로 넣어졌다. 그리고 깃, 소매끝, 도련에는 雲鳳紋을 금박하였다. ……이하 略¹⁶⁾

위에 실린 王妃(嬪宮)와 皇后(皇太子妃)의 翟衣制度

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王 妃 (嬪宮) | 皇 后 (皇太子妃) |
|------|--|-----------------------|
| · 形態 | 길이 : 前長齊裳端 後 長過裳端尺 설선 : 不相掩如背子 襯 : 不明 | 前後同 相掩 紅領標襖裙 |
| · 紋樣 | 貼繡圓翟 | 織翟紋十有二等間以小 輪花(※九等) |
| 色彩 | 大紅(※鵝青) | 深青 |

정리된 대략의 차이점을 諸嘉禮都監의 條目과 비교,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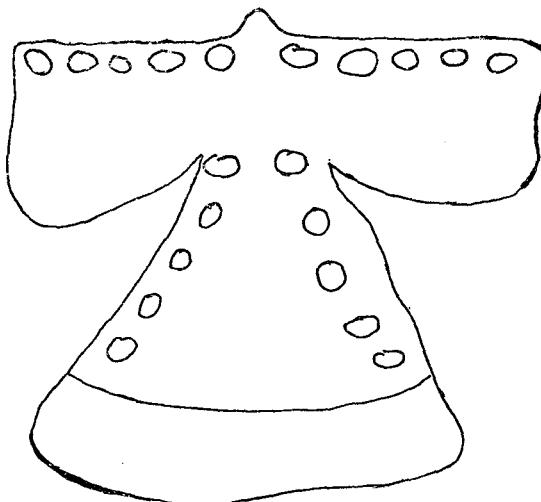
i 形 態

○길이

國朝(註15참조)의 내용으로는翟衣의 앞은 裳端과 가지런하고 뒤가 一尺쯤 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根據로 戊寅年 都監에 실린 그림을 들고자 한다. (圖 1)

이 그림에는 옷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法服부분에 속해 있으며 함께 실린 前後 36皆此様이라는 雙鳳紋(圖6 참조)은 丁卯年 嘉禮圖監(表 I 참조)翟衣에 딸린 「如貫子繡36片」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에翟衣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옷의 下部에 마치 단처럼 표시된 선은 世宗祖 武舞工人的 衣에서(圖 1) 表示된 “前短後長”으로 보아 같은 형태로 뒤가 길고 앞이 짧을 樣이라 추측된다. 이것은 裳과 가지런한 앞길이에 그보다 1尺쯤 긴 뒷길이라 추측된다. 소요되는 옷감의 칫수는 대략 「길감 35자5치, 안감 5자5치」로 후의 純宗妃(皇太子妃)(表IV 참조)의 칫수와 같음은 앞과 뒤의 차

[戊寅年 嘉禮都監 儀軌]



[世宗朝會禮宴用雅樂時武舞工人所着衣]

衣

衣從五方之色以青黃紅白黑段爲之前短後長領圓而廣胸方而長前後及兩袖蓋蔓花東方青衣(用藍色)領及胸用紅金線胸兩邊有綠用段(西北中領胸及胸綠同)袖端連縫黑段黃綃(西南袖端同)裏用紅綃(西北裏同)西方白衣南方紅衣領胸用綠金線胸綠用藍段裏用藍綃(中裏同)北方黑衣袖端連縫綠段黃綃中央黃衣袖端連縫黑段紅綃。



[圖 1]

이가 절충되었으리라고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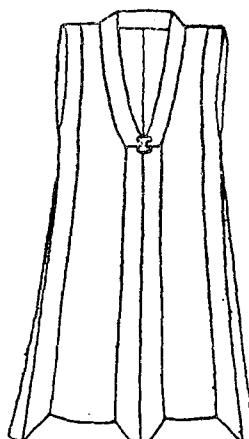
○설 선

增補에는(註15참조) “前面의 左右가 곧바로 내려와 여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國朝에는 덧붙여 如背子(여여지지 않음이 배자와 같다)라 하였다.

여기서 背子에 대하여 잠깐 살피고 넘어가기로 한다

半 臂

實錄曰隋大業中內官多服半臂除即長袖也唐高祖滅其袖謂之半臂今背子也 江淮之間或曰綽子士人競服隋始制之也今俗名搭護又名背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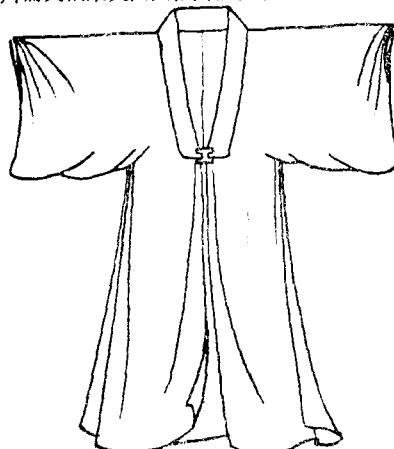


[圖 2]

英祖祖 閑靜堂集에는 「所謂 長背子는 長袖이고 兩裾가 서로 떨이고 兩腋을 제매지 않은 것이다. 그 半臂과 하는 것은 지금의 掛子와 비슷하다. 다만 掛子의 兩裾가 수직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 半臂의 짧은 것은 지금의 背子다」¹⁷⁾라고 있어 半臂, 背子는 相掩, 掛子는 兩裾수직으로 써어 있다. 하나 石宙善「韓國服飾史」의 半臂〔圖 2〕는 兩裾수직으로 半臂과 掛子의 混用이 있지 않았는가 의심된다.

襤 子

即今之披風實錄曰秦二世詔朝服上加褙子其制袖短于衫身與衫齊而大袖宋文長與裙齊而袖纏寬于衫。



〔圖 3〕

明仁宗孝文皇后像



〔圖 4〕

大衫의 制度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시된 明仁宗孝文皇后像에 (圖 4) 보이는 服飾은 霞帔를 걸치고 있는 점으로 大衫으로 보인다. 全面이 그려진 것이 아니긴 하나 上部만으로 볼 때는 것부분이 곧바로 내려와, 좌우가 서로 가릴만큼 여여지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여지지 않는 大衫의 樣式이 褦衣形態에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진리를 밝힌다.

宋真宗后坐像



〔圖 5〕

○襤

純國朝에는(註15참조) 不錄하고 增補文獻의 皇后 및 皇太子妃의 경우(註16참조) 깃, 소매끝, 도련에 紅色襤을 두루고 雲龍紋(雲鳳紋)을 織金한 것으로 되어 있다. 都監의 기록에도 역시 壬午年(純宗 純明后 1882)까지는 繪次가 없으며 마지막 純宗妃(1900) 嘉禮時에 (表IV 참조) 繫次로 大紅織金雲鳳紋匹段一匹로 되어 있어 이 사실에 부합한다. 英祖 이후 褦衣所用 내역에는 「襤雞註成次 泥金 五錢으로 있으니 繪부분 혹은 같은 감으로 댄 단에 褦雞를 付金한 양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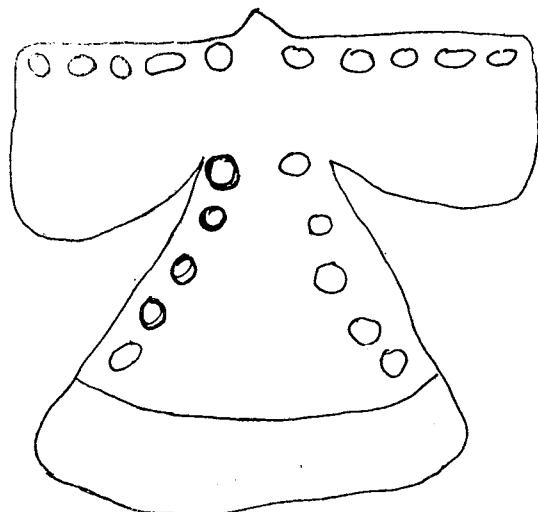
ii 紋 樣

○織圓襤

續國朝에(註15)에 실린 바로는「前補下에 左右 양쪽으로 각 7씩 옷단까지 붙이되 옷단의 것은 左右 각 하나를 이어지는 듯 붙이고 後補下에 左右로 각 9씩 붙이되 옷단 중앙에 하나를 더 붙여 연하듯 한다. 소매를 옷앞에 가지런히 모아 넓은소매 바깥쪽에 9씩을 붙여 그 수가 모두 51이다」

都監중 辛亥年, 丁卯年(表 I) 翟衣所用物目에는 如貫子繡 36片이 있어 이 繡圓翟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더욱 나아간 자료를 찾던 중 앞서 제시된 戊寅年 그림을 발견하고 거의 확실시 하게 되었다. 如貫子라 함은 원형이되 좀 작은 칫수의 모양을 일컬은 것이라 생각한다. 戊寅의 그림내용과 續國朝(註15참조)와

〔戊寅年嘉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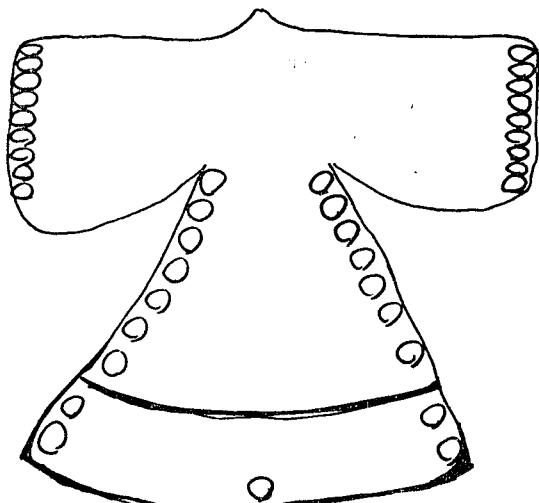


前後36皆此樣



〔圖 6〕

[續國朝五禮儀補에 의거한 繡翟圓翟 배열 방법 추측 圖示]



〔圖 7〕

의 차이점은 36과 51의 個數, 배열 방법, 그리고 圓翟繡에 대한 圓鳳紋繡라는 점에 있다. 36의 배열 방법은 그림을 통해서도 확연히 알지는 못하겠고, 續國朝에 따른 51의 배열 형태를 추측하여 圖示하여 보았다〔圖 7〕

英祖이후 國婚이나 都監에 圓翟繡가 기재되지 않고 해서 혹 續國朝(註15)에 실린 제도는 英祖以前에 실시된 복식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으나 國婚定例는 英祖25年, 續國朝五禮儀는 英祖27年 發刊이며 圓翟의 내용으로 보아, 종래 翟衣制度의 확인이자 裳, 蔽膝등 英祖代에 확립된 法服制度로서 後代까지 계속 적용된 기준이라고 거듭 정의하겠다.

그렇다면 繡圓翟이 누락되었거나, 혹은 기재된 物目 중 자세하게 밝히지 않은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後者の 경우 「繡」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如貫子繡가 나오는 경우인 辛亥, 丁卯(表 I), 戊寅, 畿宗時의 都監에 繡가 아울러 并用 기재되지 않은 점은 그런 추측을 더욱 굳히는 사실이나 다만 圓翟繡가 사용되지 않은 純宗妃(表 IV)의 경우에도 繡次로 大紅匹綵이 등장하는 점에서 단언할 수 없는 추측이다.

황后的 경우는(註16) 12등분된 翟紋과 사이사이에 小輪花로 칙조되었으니 현존유물로 볼 때 대략 312首의 翟紋과 小花 160個로 구성되었다.

皇太子妃는 九等 翟文이다.

○ 色 彩

孝宗實錄에 「明聖王妃(顯宗妃) 冊禮時 冊禮都監에서 「癸亥(仁祖元年 仁祖妃冊立), 戊寅(仁祖16年 仁祖妃莊烈后) 前後冊禮에는 中殿法服인 翟衣, 烏襪이 癸亥에

는 黑色을 사용하고 戊寅年에는 紅色을 使用하였으니
지금은 무슨 색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하고 啓합에 孝宗은 舊例에 好아 大紅色으로 하라고 命하였다.^[18] 그러나 그 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都監中에도 밝히지 않았으나 실제 적용된 物目單子에는 鴉青色의 翟衣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과 都監中에 표시된 翟衣色彩를 圖示하면

黑 → 鴉青 → 大紅 → 鴉青 →
(癸亥)妃 (丁卯)嬪 (戊寅)妃 (顯宗妃)嬪
大紅(王妃), 鴉青(嬪) → 鴉青 → 深青
(國婚) (壬午)嬪 (丙午, 純宗妃)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舊例는 孝宗祖까지도 뚜렷한 規範이 없어 大紅, 黑 또는 鴉青이 사용된 사실 英祖時 王妃, 嬪이 각각 大紅, 鴉青으로 화립되어 준수된 사실, 高宗祖 明制에 의거 深青으로 변환된 사실이다.

그런데 孝宗時 임금의 명이 내려진 후 실제로는 大紅이 아닌 鴉青色이 적용된 사실의 이면이 궁금하나 밝혀진 바는 없기에 추측컨대 孝宗時 亂後 明制服飾의 追考과정에서 青色이 도입되었으나 화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 아직도 舊例 즉 大衫에 따른 翟衣는 大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형편에서 紅色으로 정했다가 다시 青으로 변복될 것이 아닐까 한다.

혹은 이미 大紅 鴉青의 차동분화가 있어 戊寅 王妃 紅色, 昭顯世子嬪, 顯寅妃(嬪)는 아침이 적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도 있으나 癸亥 王妃 黑色이 결리기에 확실하게 단정지울수는 없을 것 같다.

III. 結論

太宗祖를 필두로 仁祖三年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난
明으로부터의 王妃冠服 賦與制度는 七翟冠, 大衫, 露披
團衫, 褐裙등의 郡王妃 制度였다. 이러한 郡王妃 制度는
李朝前期 우리나라 王妃法服에 그대로 적용 준수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翟冠과 아울러 露披의 翟衣등은 大衫을 翟衣
로 誤認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示唆해 주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翟衣는 大紅(大衫色)이라는 认識이 舊
例로 전해져 오는 점에서 王妃法服 大衫이되, 翟衣로
서 认識되어 왔을 것이라 믿는다. 다음 실제의 翟衣가
제정된 시기를 끊는데에 嘉禮都監의 辛亥年(光海3년)
이 翟衣, 大衫이 아울러 記載된 最古의 해로서 소급된다.

光海 바로 前代인 宣祖時에는 亂의 불가피한 결과로
大明集例에 의거하여 새로이 王妃服飾이 制定된 시

기이다. 亂의 前後사정으로 미루어 翟衣制定은 이時期 즉 宣祖 35年 仁穆王妃 嘉禮時라고 생각된다.

翟衣制度는 宣祖이후 점차 격식을 갖추어 英祖 國婚
定例와 國朝續五禮儀補를 통해 法服制度로 정리 확립
되어 준수되고 후에 高宗祖 大韓帝國의 成立으로 明皇
后, 皇太子妃의 翟衣制度로 변천했다.

英祖代 확립된 翟衣는 고종조 皇后의 제도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닌 國俗化된 翟衣이다. 그 차이점과 变천
사항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增補文獻備考(國朝續五禮儀)
에 실린 王妃, 嬪宮制度, 皇后 및 皇太子妃 制度를 정리하고
諸嘉禮都監, 國婚(尙方) 定例에 실린 실제 격
용례와 비교하여 그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였다.

國俗化된 翟衣制度는 대략 앞보다 뒤가 깊, 섭신이
여여자지 踏음, 편을 대지 않음, 繡圓翟(51個)을 붙임
대홍(鴉青)色, 諸附隨品의 차이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國俗化된 翟衣는 大衫과 절충된 양식이 아닐까
하는 見解를 밝힌다.

衣樹는 妃嬪의 常服이자 그 기본 양식은 宮中 女服
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함께 섭신 尚宮, 侍女,
內人们的 服飾과 비교하여 그 尊卑의 차이를 어림하고
각 시대에 따른 服飾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宮中女服의
概觀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法服에 딸린 附隨服
飾과 더불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引用文獻

- 1) 金東旭; 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Ⅳ, 高大民族文化研究所, 23 (1971)
- 2)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22 (1969)
- 3) 李丙壽; 國史大觀, 普文閣, 375 (1961)
- 4) 李朝實錄
- 5) 仁祖實錄(3) 仁祖十七年六月 辛亥
- 6)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438-441 (1975)
- 7) 文宗實錄 六 文宗即位年 三月
- 8) 世宗實錄(1) 世宗2年 七月
- 9) 世宗實錄(3) 世宗二十八年 三月 甲午
- 10) 高光林; 翟衣에 관한 연구, 仁川教育大學論文集第
八輯, 265 (1974)
- 11) 宣祖實錄. (4) 宣祖三十五年七月庚申 嘉禮都監啓曰
翟衣之制 當初未有所考 但據大明會典 親王郡王 王
妃冠服制度 則大衫霞披 衫則用大紅霞披以深青爲質
紵絲紗羅 隨用四揆襍子 則襍子桃色 鞠衣青色紵絲
羅 並各色隨用 惟不用黃大帶 青線羅爲有紅線 或用
紅羅 玉縠圭 玉革帶 玉花朵 結綏玉佩 青襍子 具備

以此見之 前日天朝欽賜翟衣 多有未備之物 而賚使臣 未及覺察也 若備玉革帶 佩綏襪 焉 則必有九翟冠 然後方備其制而 今難卒備 五禮儀 有翟衣加首飾之文 首飾 既從國俗磨鍊 翟衣之上 不得已只用大帶而行禮乎 制度未備 甚似苟簡 何以爲之 會典親王妃禮服條 大帶從衣色云 今宜依此磨鍊 大典會典 付標以啓 傳曰 不小事 當初詳察事也 今者衣八內 無帶 豈有禮服 而無帶之理乎 下問之後 乃有此言 今難卒備某色帶 從速磨鍊

- 12) 宣祖實錄 (4) 宣祖三十五年七月庚午 禮曹判書柳根箚曰 臣竊考五禮儀 但有王妃 具翟衣加首飾之文 其於冠帶制度 未魯講究 窃聞麗代儒臣鄭夢周 始創冠服 是誠用夏變夷之始 而婦人冠服之制 特未遑焉耳 我殿下 慨然取法於 天朝典章 王妃服飾 悉遵大明會典所載 而爲之 取少者冠耳 今若速分貿來王妃冠制于中朝 廟見大禮 汲汲講而行之 雖未及三日之內 亦可行之於三月之後 此豈非正始之急先務 而丕變國俗一遵華制 亦宜自今日始此又一大機會也 以臣孤陋 遷叅禮官 荷有所懷 不取不達 伏願聖明 將臣所議 下詢廟堂而處之 答曰省箚 具見誠疑 但未講之禮 輕舉爲難
- 13) 仁祖實錄 (3) 仁祖二十三年七月 乙卯 冊禮都監啓 曰 嫔宮冊禮時 既有翟衣 則當有翟冠 而我國匠人 不解翟冠之制 考詰贍錄 則宣廟朝壬寅年嘉禮時 都監啓以七翟冠之制 非但匠人未有解 知者各樣等物 必須買取於中朝而 終難自國制造 何以爲之云 則 宣廟有冠則制造爲難之教 且自癸亥以來 雖經嘉禮 而皆不用翟冠 以髮髮爲首飾以成禮 今則何以爲之 答曰 依癸亥以後例爲之
- 14) 朝鮮史 第五編 第一卷 光海3年 八月 朝鮮總督府 104.
- 15) 增補文獻備考 卷79 禮考十五，十六，○王妃禮服圭以白玉爲之同殿下圭首飾略如周禮而加以 金粧翟衣以大紅緞爲之 前面左右相對直下不相掩前長齊裝端

後長過裝端尺餘衣前後貼金繡五爪圓龍補前補下 貼繡圓翟左七 右七 以至衣端而在衣端者左右各一曲貼如相連又補下貼繡圓翟左九右九 以至衣端而又貼一翟於端之中如相連左右袂廣齊衣之前長袂口外面亦貼繡圓翟左九右九 其數共五十一 霞帔以黑緞爲表紅綃爲裏金繪雲霞 二十八翟文二十六 裳以青緞爲之前三幅短而連縫後四幅長而各二幅連縫以相掩前後有襞積中下列貼織金龍膝關 大帶以大紅緞爲表白綾爲裏緣以綠緞玉帶以雕玉爲之 裹以青緞而 金繪鳳佩綏襪並同殿下制蔽膝而無綴馬同殿下馬而惟馬端貼紅綠絲花三世子嫡禮服圭以青玉爲之同王世子圭首飾霞帔大帶佩綏蔽膝並同王妃制翟衣以黑緞爲之 衣前後貼金繡四爪圓龍補而衣制與繡圓翟同王妃服裳同王妃裳而裳中下列貼織 金鳳玉帶以不雕玉爲之裏以青緞金繪鳳襪以黑緞爲之馬以黑緞爲表曰羅爲裏馬端絲花同王妃馬

- 16)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禮考 十八，二十，○皇后冠服 九龍四鳳冠漆竹絲爲圓匡冒以翡翠上飾翠龍九金鳳 四正中一龍銜大珠一上有翠蓋下垂珠結餘皆口銜珠滴翠雲 四十片大珠花 十二樹小珠花如大珠花之數三博鬢飾以金龍翠雲皆垂珠滴翠口圈一副上飾珠寶鉤花 十二翠鉤如其數托裏金口圈一副珠翠面花五事珠排環一對自羅額子一描金龍文用珠二十一顆 翟衣深青爲質織翟文十有二等間以小輪花紅領襯襯裙緞金雲龍文紵絲羅隨用 ○皇太子妃冠服 九疋四鳳冠漆竹絲爲圓匡冒以翡翠上飾翠翟九金鳳四皆口銜珠滴翠雲四十 片大珠花九樹小珠花如大珠花之數雙博鬢飾以鸞鳳皆垂珠滴翠口圈一副上飾珠寶鉤花九 翠鉤如其數托裏金口圈一副 翟衣深青爲質織翟文九等間以小輪花紅領襯襯裙緞金雲鳳文紵絲羅隨用，
- 17) 宋文欽；閑靜堂集 卷七 雜著
- 18) 孝宗實錄 卷六二年辛卯六月，○冊禮都監啓曰取考癸亥戊寅前後冊禮贍錄則 中殿法服翟衣及馬襪癸亥年用黑色戊寅年用紅色今則當用何色乎請公尚衣院預稟織造俾無窘迫之患 答曰舊例用大紅色矣